

제 269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3.10.)

조례안·일반의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3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4	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5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1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3. 10.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2. 23.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3. 2. 2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3.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전략담당관 류현복]

가. 제안이유

- 드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대상을 교육기관으로 한정하던 것을 드론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드론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군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대상 확대함(안 제5조)
 - 1) 드론 교육기관 ⇒ 드론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
- 드론 교육을 받은 군민에게 교육경비 지원 신설(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2017년 11월 드론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 2017년 12월 드론산업발전 기본 계획 수립, 2019년 4월 드론법 제정, 2020년 11월 드론산업 육성 정책 2.0을 발표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드론산업을 집중 육성 중임.
- 세계 드론시장은 ‘20년 기준 225억\$이며, 연평균 13.8% 성장하여 ‘25년에는 428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 규모 역시 ‘16년 704억원에서 ‘20년 4,945억원으로 크게 성장하여 ‘24년에는 8천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일상 속에서 드론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드론 레이싱, 드론 축구, 드론 낚시 등 드론 레저산업이 각광을 받는 상황에서
- 우리군에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많은 군민들이 드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일반적인 조레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더 나아가 향후 드론 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드론 부품·기체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드론 비행시험장, UAM시험설비 등 상용화 지원으로 블루오션을 개척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1부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교육기관”을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술시장 선도를”을 “기술시장 선도와 드론 활용 촉진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기관”을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제7조 조 제목 “(드론 체험 및 교육)”을 “(드론 교육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민”을 “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실시할”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드론 교육을 받은 군민에게 해당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u>교육기관</u>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사용 사업자(법 제2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u>기술시장 선도를</u>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p>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하는 <u>교육기관</u>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p>	<p>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u>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u>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사용 사업자(법 제2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u>기술시장 선도와 드론 활용 촉진을</u>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p>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하는 <u>기관·법인 또는 단체</u>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p>
<p>제7조(드론 체험 및 교육) ① 군수는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u>군민</u>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u>실시</u>할 수 있다.</p> <p>② <u>군수는 그 밖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u></p>	<p>제7조(드론 교육 및 지원) ① 군수는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u>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u>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u>할</u> 수 있다.</p> <p>② <u>군수는 드론 교육을 받은 군민에게 해당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1) 드론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 2) 드론 교육에 드는 경비 지원

나. 관련조문

- 1)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안 제5조)
- 2) 드론 교육 및 지원(안 제7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5년)	합계
군비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2023년)

1. 학생대상 드론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10,000천원
2. 드론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30,000천원

작성자 전략담당관 류 현 복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3. 10.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2. 23.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2. 2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3.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전략담당관 류현복]

가. 제안이유

- 농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만성화된 농촌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와 농촌인력증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업인 등에게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거창군 농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정함(안 제4조)
- 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 기능·구성 등을 정함(안 제5조~제11조)
- 농촌인력증개센터 기능 등을 정함(안 제12조)

- 농촌인력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을 정함(안 제13조)
- 지원 신청 등을 정함(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계속되는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으로 인해 재배규모를 줄이거나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으며
-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위기 등의 위협으로 우리 군도 언제 식량위기를 겪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군민의 건강한 먹거리 사수를 위해 1차 산업을 지탱해야하는 의무가 있음.
-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농작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와 중개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고 직영 또는 전문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면 체계적인 농촌인력의 관리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 다만,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자칫 인건비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는 바임.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1부.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작업(이하 “농작업”이라 한다)을 위해 고용하거나 참여하게 한 사람(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을 말한다.
3.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거창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 시책 및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 훈련
 4.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운영과 지원
 5. 농촌 일자리의 홍보와 정보제공
 6.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휴 노동력 확보와 활용
 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운용
 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 농작업의 구인·구직 확대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인력 확보정책 등에 관하여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촌일손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농업인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
 - 나. 농촌인력 중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농촌일손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농촌인력중개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촌인력난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중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중개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연계

3.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4. 농촌인력의 관리·지원
 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농업 고용서비스 표준안 개발 및 보급
 7.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지원
 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운영
 9. 그 밖에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중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센터의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① 군수는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등 주거환경 개선
2. 농촌인력난 해소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국외 출장 시 필요한 비용

② 군수는 농업인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산업재해 및 상해 보험료

나. 교육비, 숙박비 및 식자재비, 농작업 안전물품

3. 내국인 고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

나. 중개센터를 통해 농작업 참여자를 이용할 경우 식비

③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록에 드는 비용
3. 감염병 방역 및 격리 비용, 의료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

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지원 신청 등) ①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시고용인력센터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인력중개센터로 본다.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나. 관련조문: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안 제1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군비	300	300	300	300	300	1,50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연 300백만원

작성자 전략담당관 류 현 복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10.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2. 23.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2. 2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3.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가. 제안이유

- 고물가·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제때 탄력적 지원을 위하여 이차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특례보증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소상공인 정의 인용 상위법령 변경(안 제2조)
 -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기본법」
- 이차지원에 대한 정의 구체화(안 제2조)
- 이차지원 범위를 규칙으로 위임(안 제5조)
- 특례보증 신설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제2조에 상위법령에 따라 소상공인 정의를 새롭게 하고, 이자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고
- 제7조에 특례보증 근거를 신설하여 고물가, 고금리,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1부. 끝.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상공인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통하여”를 “통하여 다음 각 목의 목적으로”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창업자금: 사업장 증축·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하여 대출받은 자금
- 나. 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출받은 자금

제4조와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소상공인 지원) ① 군수는 군의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이자지원
- 2. 소상공인이 이자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의 신용보증 수수료

②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극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제외 대상) ①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 1. 창업자금: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인 자. 다만, 증축·개축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 2. 경영안정자금: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인 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에서 제외한다.

- 1.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사치·향락업종
-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

③ 이자지원의 지원 범위와 기간,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지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준 확대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특례보증) 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군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대출을 받고 그 금융기관에 부담하게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3항, 제6조제1호,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상공인"이란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금고나 조합 등을 말한다. 3. "이자지원"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예산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u><신 설></u></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u><신 설></u></p> <p>제4조(지원·제외 대상) ① 군수는 관내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창업자금: 가게 증축·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u> 2. <u>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 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u> 3. <u>소상공인이 이자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의 신용보증 수수료</u> <p>②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극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상공인"이란 「<u>소상공인기본법</u>」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금고나 조합 등을 말한다. 3. "이자지원"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목적으로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예산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창업자금: 사업장 증축·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하여 대출받은 자금</u> 나. <u>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출받은 자금</u> <p>제4조(소상공인 지원) ① 군수는 군의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이자지원</u> 2. <u>소상공인이 이자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의 신용보증 수수료</u> <p>②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극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상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창업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인 자. 다만, 증축·개축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음

2. 경영안정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인 자

④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사치·향락업종 등 규칙에서 정하는 업종은 제1항의 이차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이차지원 등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금은 5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5퍼센트 이내 이자

2. 경영안정자금은 5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5퍼센트 이내 이자

3. 신용보증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

②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자금별 이차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특례 지원)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이내 융자금에 대한 연 3.0퍼센트 이내 이자

2. 쓰레기봉투, 시설 개수·보수 사업비 등

제5조(지원 및 제외 대상) ① 이차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창업자금: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인 자. 다만, 증축·개축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경영안정자금: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지원에서 제외한다.

1.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사치·향락업종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

③ 이차지원의 지원 범위와 기간,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특례 지원)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차지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준 확대

2. 쓰레기봉투, 시설 개수·보수 사업비 등

제7조(지원 절차) ① 이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확인 과정을 거쳐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특례보증) 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군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대출을 받고 그 금융기관에 부담하게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소상공인 이차지원 범위 확대

나. 관련 조문: 소상공인 지원(안 제4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3)	2차연도 (2024)	3차연도 (2025)	4차연도 (2026)	5차연도 (2027)	합계
군비	192	384	384	384	384	1,728

3. 관련 의견

고물가·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도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이차지원

1) 2023년: 융자액 48억(출연금의 12배)×4퍼센트=192백만원

2) 2024년: 384백만원

작성자 경제기업과장 이 정 희

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3. 10.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2. 27. 이재운 의원

나. 회부일자 : 2023. 2. 2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3.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재운 의원]

가. 제안이유

-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 지원 규모를 확장하여 주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함
- 지원대상을 마을공동이용시설물에서 마을회관으로 변경(안 제 2조~제5조)
- 지원금액을 확대함(안 제5조)
 - 1) 원칙: 1천만원 이내 ⇒ 2천만원 이내
 - 2) 예외: 붕괴 또는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 준용, 시행규칙 삭제(안 제9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제2조 시설물의 종류를 경로당, 놀이터 등 관리주체가 분명한 항목은 제외하고 마을회관 등으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 제5조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 지원금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현실화하여 시설물 이용 및 유지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음.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를 “거창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의 이용과 유지”를 “마을회관의”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이 집회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중 “마을 공동 이용시설물”을 “마을 회관”으로 각각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사업비 지원 대상은 제2조의 마을회관의 유지 관리 및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단위당 사업비가 2천만원 이내인 소규모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붕괴 또는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마을 공동이용 시설물의 이용과 유지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시설물의 종류) 이 조례에서 관리하는 마을 공동 이용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거용 건물 2. 놀이터, 쉼터 등 마을 휴게 시설물 3. 공동 창고, 공동 주차장 등 마을 편의 시설물 4. 기타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 <p>제3조(시설물의 관리) ① <u>마을 공동 이용시설물은 마을 이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u></p> <p>② <u>마을 공동 이용시설물은 마을 주민의 후생복리를 위해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제4조(지도·감독) ① <u>군수는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유지 관리 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u></p> <p>② <u>군수는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제5조(지원대상) <u>사업비 지원 대상은 제2조의 마을 공동 이용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단위당 사업비가 1천만 원 이내인 소규모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6조(사업의 신청) ① <u>시설물의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u></p>	<p style="text-align: center;"><u>거창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마을회관의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u>마을회관</u>”이란 <u>마을 주민들이 집회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u></p> <p>제3조(시설물의 관리) ① <u>마을회관은 마을 이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u></p> <p>② <u>마을회관은 마을 주민의 후생복리를 위해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제4조(지도·감독) ① <u>군수는 마을회관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유지 관리 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u></p> <p>② <u>군수는 마을회관의 유지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제5조(지원대상) ① <u>사업비 지원 대상은 제2조의 마을회관의 유지 관리 및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단위당 사업비가 2천만원 이내인 소규모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u></p>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붕괴 또는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제6조(사업의 신청) ① <u>시설물의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u></p>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마을 이장은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마을의 지도자 등과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본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마을 이장은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마을의 지도자 등과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23. 3. 10.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2. 23.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2. 2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3.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윤광식]

① 제2창포원 생활체육시설 부대시설 확충 사업

1. 제안이유

-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하 하천환경정비사업에서 발생 되는 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 시설 조성하고 있음
 - ※ 체육시설 : 파크골프장 36홀, 축구장 3면, 풋살장 2면
- 하천구역 내 이동 또는 고정 건축물 입지가 불가하여 인근 부지를 취득하여 화장실 등 이용자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505번지 등 7필지

- 대지면적 : 6,103m²
- 사업내용 : 관리사무실 200m²(사무실, 화장실 등), 주차공간 등
- 사업기간 : 2023. 1. ~ 2024. 12. / 2년간
- 사 업 비 : 1,500백만원 정도
- 주요기능 : 제2창포원 생활체육시설 부대시설 확충 부지로 활용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 m², 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7필지		6,103	107,034,100			
취득	토지	남하면 무릉리 505	답	1,244	25,128,800	2023	제2창포원 생활체육 시설 부대시설 확충	
		남하면 무릉리 504	답	127	2,565,400			
		남하면 무릉리 503	답	1,276	20,033,200			
		남하면 무릉리 502	답	506	7,944,200			
		남하면 무릉리 501	답	1,043	22,320,200			
		남하면 무릉리 501-1	답	1,159	18,196,300			
		남하면 무릉리 496	답	748	10,846,000			

※ 기준가격은 최근 공시지가 기준가격임(본 감정평가 시 변동가능성 있음)

다. 추진경과

- 2021. 6. : 하천환경정비사업 부지 체육시설 활용 건의(군수)
- 2021. 7.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22. 10. : 하천기본계획 변경(복원→친수)

라. 향후계획

- 2023. 1. :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 수행
- 2023. 2. : 파크골프장 하천점용허가 및 위·수탁 협약

- 2023. 5. : 편입부지 보상 협의
- 2023. 6. : 실시설계 용역
- 2023. 10. :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수행
- 2024. 1 : 사업 착공
- 2024. 12 : 사업 완료

마.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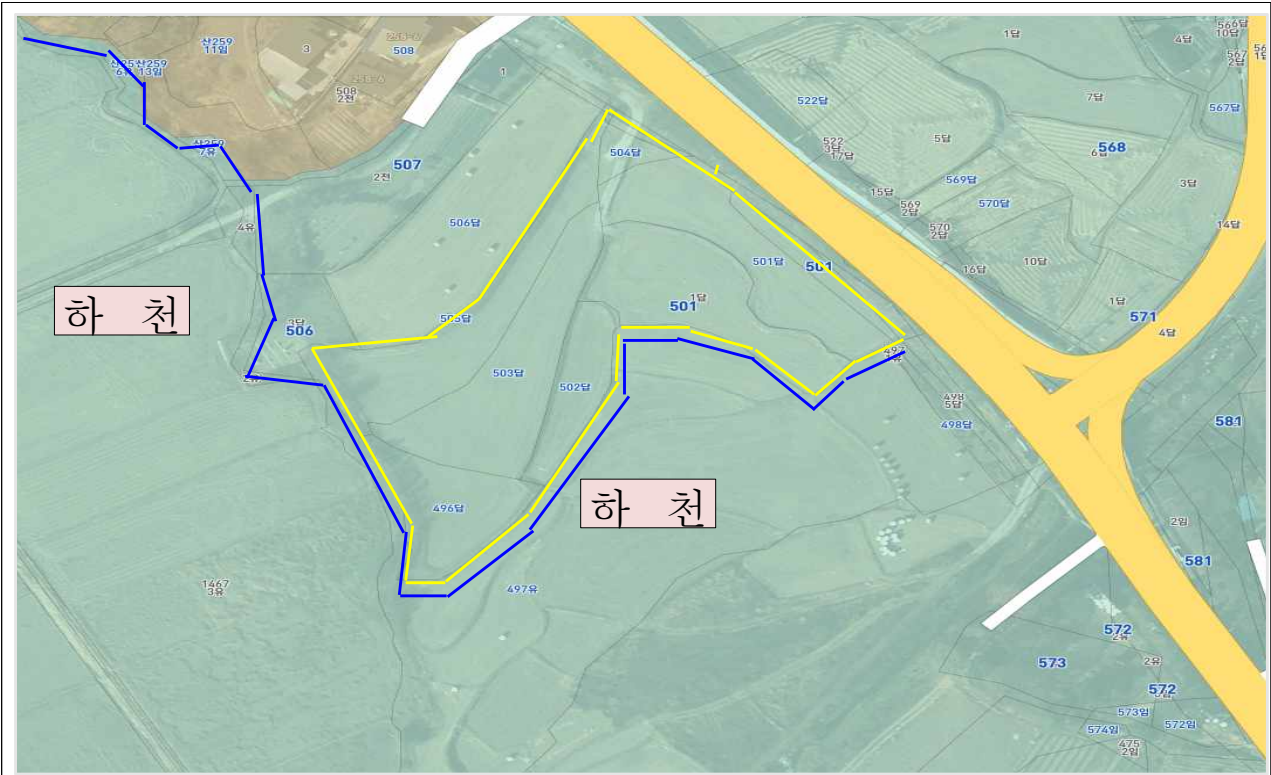
- 제2창포원 생활체육시설 이용자 및 각종 대회 참여자들의 편의 증진
- 군민 여가 및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 및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참조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 : 남하면 무릉리 505번지 등 7필지



위 치 상 세

② 감악산 별바람 언덕 조성 사업 변경

1. 제안이유

- 감악산 별바람 언덕 조성과 감악산 산림관광 지구조성을 위한 토지취득 내용 변경에 따른 취득 계획 변경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위 치 :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13-17번지 외 12필지
- 대지면적 : 746,087㎡정도(1,844,438㎡→ 746,087㎡)
- 사업기간 : 2023. 1. ~ 2024. 12. / 2년간
- 사 업 비 : 7,000백만원(국비 3,500 지방비 3,500)
- 내 용 : 감악산 산림휴양관광 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산림 치유의 숲(80ha), 숲속야영장(25ha) 조성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공시지가)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746,087	307,806			
취득	토지	신원면 덕산리 산13-1	임야	68,838	43,368	2023	감악산 별바람 언덕 조성	
		신원면 덕산리 산13-14	임야	1,920	1,267			
		신원면 덕산리 산13-15	임야	27,075	17,328			
		신원면 덕산리 산13-16	임야	1,767	1,166			
		신원면 덕산리 산13-18	임야	128,659	59,183			
		신원면 과정리 산150	임야	277,040	99,734			
		신원면 과정리 산150-1	임야	14,823	5,485			
		신원면 과정리 산150-2	임야	600	222			
		신원면 과정리 산153	임야	595	220			
		신원면 과정리 산154	임야	46,909	16,418			
		신원면 과정리 산159	임야	39,967	14,788			
		신원면 과정리 산161	임야	36,340	13,082			
		신원면 과정리 산132	임야	101,554	35,544			

다. 추진경과

- 2021. 12. : 감악산 및 주요명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시행
- 2022. 11. : 감악산 및 주요명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준공
- 2022. 11. : 2022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통과)

라. 향후계획

- 2023. 1. : 감악산 별바람 언덕 조성 타당성 용역 시행
- 2023. 1. : 감정평가 등 매입 전 사전절차 이행
- 2023. 3. ~ 6. : 토지 매입

마.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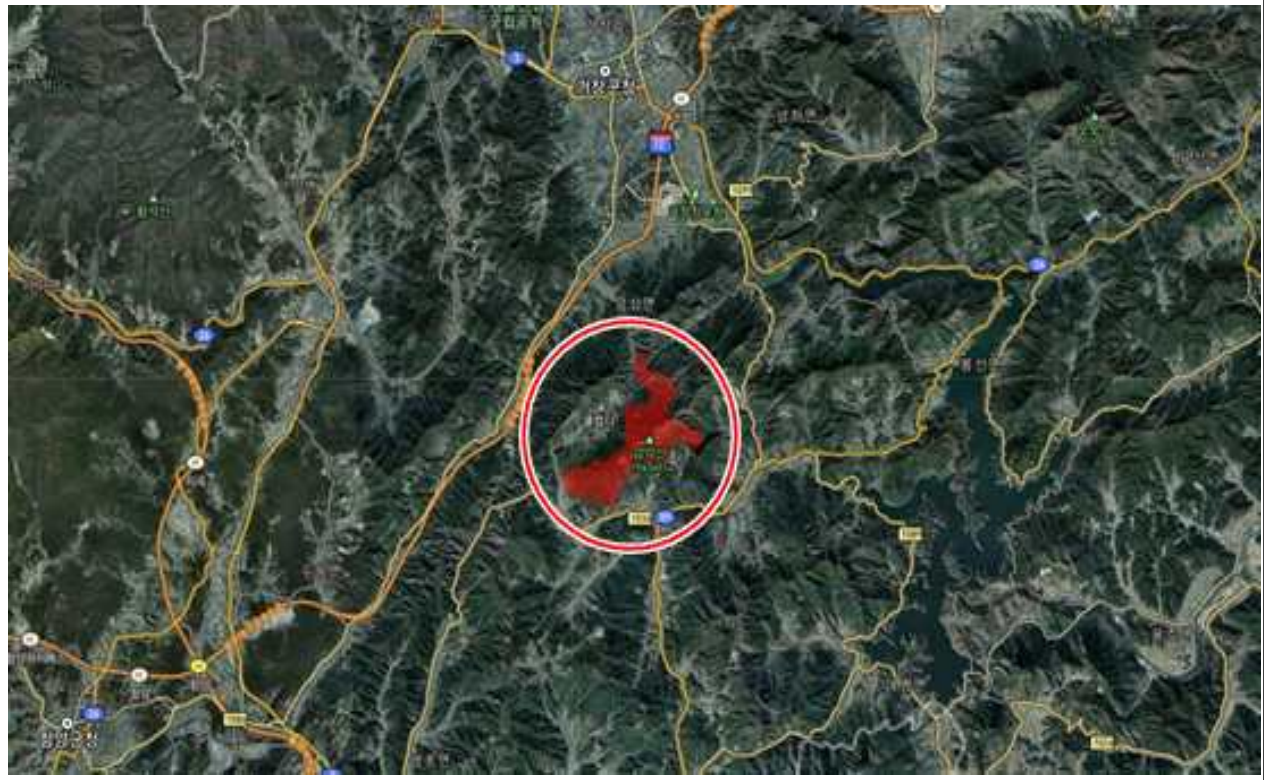
- 마스터플랜의 치유의 숲과, 숲속야영장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로 감악산 관광지 사업의 안정적 추진

3. 관련법규 및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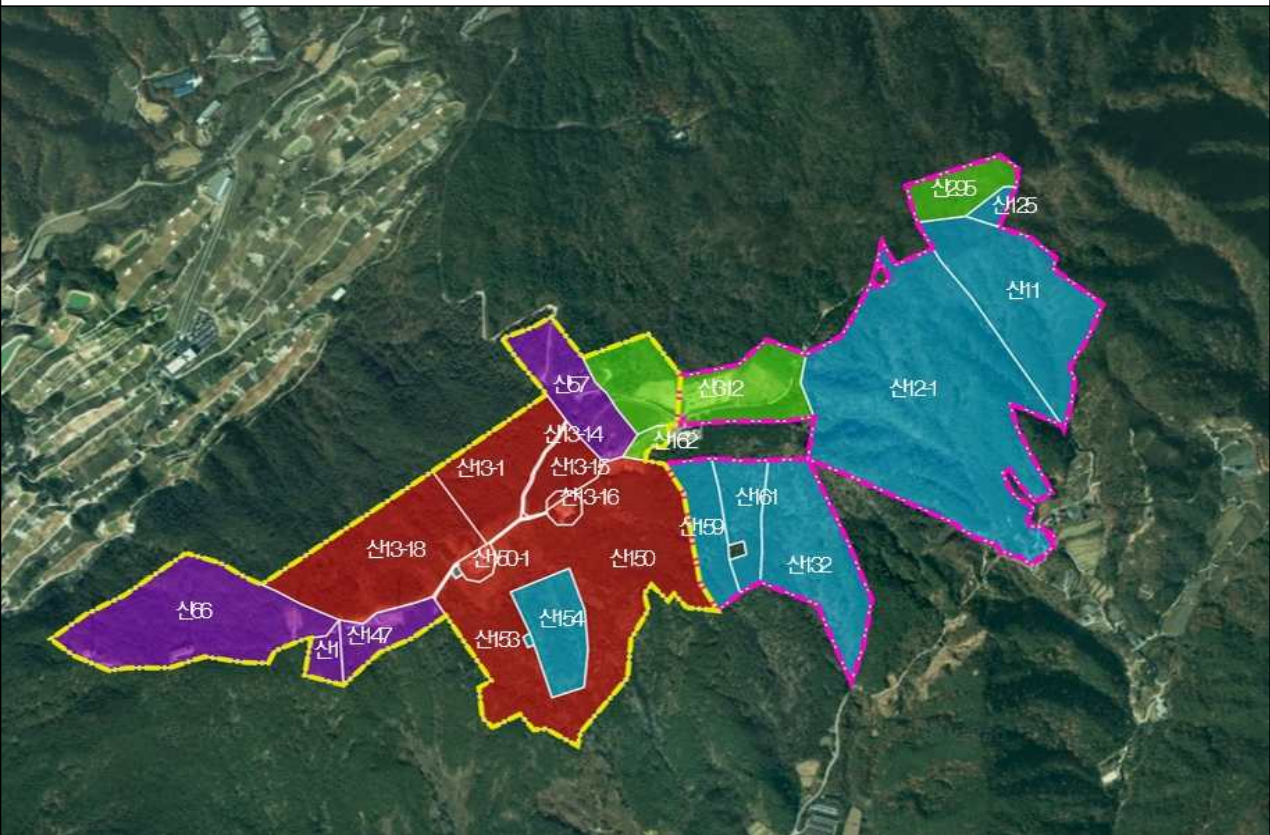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 및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참조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 : 신원면 덕산리 산13-1 등 13필지



지구조성 계획(안)

③ 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편입부지 및 지장물건 매입)

1. 제안이유

- 농식품부 소관 “2022년 농촌공간정비사업 3차 지구”로 선정된 「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방치된 축사 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소와 유해물질의 취수원 유입으로 인한 환경피해 예방, 지역민의 삶 건강권 확보 목적을 위해 사업 대상지 토지 및 지장물건(폐축사 등) 등을 매입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사업명 : 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527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 10. ~ 2026. 12. / 5년간
- 사업내용 : 폐축사 철거 및 동산마을 환경개선
(친환경 경관농업단지 조성, 치유마을 조성 등)
- 총사업비 : 25,000백만원 (국 12,500, 도 3,750, 군 8,750)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5%)	4년차 (25%)	5년차 (25%)	비고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25,000	2,500	3,750	6,250	6,250	6,250	
국 (50%)	12,500	1,250.0	1,875.0	3,125.0	3,125.0	3,125.0	
도 (15%)	3,750	375.0	562.5	937.5	937.5	937.5	
군 (35%)	8,750	875.0	1,312.5	2,187.5	2,187.5	2,187.5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 붙임참조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1)기준가격 (천원)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 고
		소재지	면적(㎡)				
계				7,287,133			
취득	토지	거창읍 대동리 518번지 등 52필지	48,816	2,457,926	2023 ~ 2024	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	
	지장 건물	축사 84동 및 창고 33동 등 지장건물 36동	21,256	4,829,207	2023 ~ 2024	사업부지 편입	

※ 1)기준가격 적용 : 토 지 → 현.기준 공시지가
지장건물 → 가감정 결과

다. 추진경과

- 2022. 8. : 2022년 경남도 투자심사(재정영향평가) 완료
- 2022. 10. : 2022년 농식품부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 선정
- 2023. 2. : 지장물건 편입조서 및 물건도 작성용역 완료
- 2023. 2. : 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입찰 공고

라. 향후계획

- 2023. 2. ~ 3. : 농식품부 사업구역 조정·협의 → 확정
- 2023. 4. : 편입물건 보상협의 착수
※ 농식품부 협의결과에 의거 착수시기 유동적
- 2023. 3. ~ 10. :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및 농식품부 승인
- 2023. 11. ~ 2024. 6. : 시행계획 수립 추진 및 농식품부 승인
- 2024. 7. ~ 2026. 12. : 공사 착공 및 준공(장기계속공사)

마. 기대효과

- 페슬레이트 축사 정비를 통한 쾌적한 녹지경관 공관 조성

- 거창군 향노화웰니스산업 연계 녹색샵터 조성
- 농촌협약 LINK조직 연계 생태경관 학습기반 확대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지적현황, 현장전경 : 붙임참조

[붙임1] 편입토지 조서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원) (공시지가 적용)	취득 시기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계				48,816	2,457,926,300	
1	거창읍	대동리	518	전	631	18,551,400	2023~2024
2	거창읍	대동리	519	답	2,837	109,791,900	
3	거창읍	대동리	527	답	2,307	111,889,500	
4	거창읍	대동리	529-6	대	142	16,756,000	
5	거창읍	대동리	530-56	대	253	27,577,000	
6	거창읍	대동리	528-8	답	687	74,883,000	
7	거창읍	대동리	528	답	771	30,146,100	
8	거창읍	대동리	528-7	답	632	68,888,000	
9	거창읍	대동리	529-4	대	210	22,785,000	
10	거창읍	대동리	530-57	대	399	43,291,500	
11	거창읍	대동리	528-10	답	795	86,257,500	
12	거창읍	대동리	528-5	답	1,250	132,500,000	
13	거창읍	대동리	530-35	전	2,786	63,242,200	
14	거창읍	대동리	530-34	전	538	28,729,200	
15	거창읍	대동리	529-5	대	314	34,226,000	
16	거창읍	대동리	530-24	전	614	58,821,200	
17	거창읍	대동리	520-2	답	2,479	95,937,300	
18	거창읍	대동리	522-2	답	553	21,401,100	
19	거창읍	대동리	522	답	2,056	79,567,200	
20	거창읍	대동리	523	답	5,044	195,202,800	
21	거창읍	대동리	528-2	답	547	59,623,000	
22	거창읍	대동리	528-3	답	589	64,790,000	
23	거창읍	대동리	528-11	답	235	24,910,000	
24	거창읍	대동리	528-1	답	266	25,482,800	
25	거창읍	대동리	528-4	답	291	32,010,000	
26	거창읍	대동리	528-6	답	486	51,516,000	
27	거창읍	대동리	529-3	대	145	17,110,000	
28	거창읍	대동리	530-11	전	245	10,486,000	
29	거창읍	대동리	530-7	전	496	19,691,200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원) (공시지가 적용)	취득 시기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30	거창읍	대동리	530-17	전	1,618	38,023,000		
31	거창읍	대동리	530-47	전	2,553	79,143,000		
32	거창읍	대동리	526	답	2,314	89,089,000		
33	거창읍	대동리	522-1	목장 용지	1,805	71,297,500		
34	거창읍	대동리	521	창고 용지	496	12,747,200		
35	거창읍	대동리	532-1	창고 용지	625	74,375,000		
36	거창읍	대동리	532-3	전	800	75,840,000		
37	거창읍	대동리	530-54	전	170	16,286,000		
38	거창읍	대동리	324-1	전	69	6,417,000		
39	거창읍	대동리	324-2	대	450	47,250,000		
40	거창읍	대동리	530-62	대	110	12,100,000		
41	거창읍	대동리	530-53	전	118	10,856,000		
42	거창읍	대동리	530-33	대	164	19,188,000		
43	거창읍	대동리	530-48	전	324	14,968,800		
44	거창읍	대동리	528-9	답	96	10,560,000		
45	거창읍	대동리	529	대	134	5,239,400		
46	거창읍	대동리	산38-6	임야	660	25,806,000		
47	거창읍	대동리	산77	구거	1,625	100,425,000		
48	거창읍	대동리	970	구거	3,226	42,260,600		
49	거창읍	대동리	971	구거	298	11,651,800		
50	거창읍	대동리	972	도로	1,759	23,042,900		
51	거창읍	대동리	530-52	전	178	16,376,000		
52	거창읍	대동리	530-23	전	626	28,921,200		

[붙임2] 편입 지장물건 조서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원) (가감정액)	취득 시기	비고
	소재지		종류	수량 및 면적	단위			
	계		21,256		㎡	4,829,207,540		
1	거창읍	대동리	518 519	퇴비사	93	㎡	11,160,000	2023~2024
2	거창읍	대동리	518 519	퇴비사	80	㎡	9,600,000	
3	거창읍	대동리	518 519	축사	104	㎡	28,080,000	
4	거창읍	대동리	518 519	축사	248	㎡	66,960,000	
5	거창읍	대동리	518 519	축사	27.36	㎡	7,387,200	
6	거창읍	대동리	518 519	축사	380	㎡	102,600,000	
7	거창읍	대동리	518 519	축사	74.8	㎡	17,503,200	
8	거창읍	대동리	518 519	축사	258.4	㎡	69,768,000	
9	거창읍	대동리	518 519	퇴비사	88.4	㎡	10,608,000	
10	거창읍	대동리	520-2 522-2	퇴비사	352	㎡	45,408,000	
11	거창읍	대동리	520-2 522-2	축사	308	㎡	74,844,000	
12	거창읍	대동리	522	축사	311.6	㎡	84,132,000	
13	거창읍	대동리	522	퇴비사	210	㎡	27,090,000	
14	거창읍	대동리	522	창고	22.1	㎡	3,978,000	
15	거창읍	대동리	522	축사	243	㎡	65,610,000	
16	거창읍	대동리	522	창고	12.5	㎡	2,250,000	
17	거창읍	대동리	522	화장실	2.25	㎡	1,200,000	
18	거창읍	대동리	522	창고	63	㎡	11,340,000	
19	거창읍	대동리	521	저온 창고	108	㎡	68,040,000	
20	거창읍	대동리	521	가추	132	㎡	12,540,000	
21	거창읍	대동리	521	바닥	120	㎡	2,400,000	
22	거창읍	대동리	530-34	축사	117	㎡	28,431,000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원) (가감정액)	취득 시기	비고
	소재지			종류	수량 및 면적	단위			
23	거창읍	대동리	530-34	창고	4	㎡	972,000		
24	거창읍	대동리	530-34	축사 (창고)	55	㎡	13,365,000		
25	거창읍	대동리	530-34	창고	7	㎡	1,701,000		
26	거창읍	대동리	530-35	축사	259	㎡	62,937,000		
27	거창읍	대동리	530-35	가추	45	㎡	3,600,000		
28	거창읍	대동리	530-35	퇴비사	264	㎡	36,696,000		
29	거창읍	대동리	530-35	축사	368.6	㎡	89,569,800		
30	거창읍	대동리	522-1	축사	695.4	㎡	187,758,000		
31	거창읍	대동리	522-1	작업장	132	㎡	39,204,000		
32	거창읍	대동리	522-1	관리사	264	㎡	102,168,000		
33	거창읍	대동리	530-17	축사	296.4	㎡	80,028,000		
34	거창읍	대동리	530-17	축사 (완파)	304	㎡	3,040,000		
35	거창읍	대동리	530-17	퇴비사	120	㎡	14,400,000		
36	거창읍	대동리	530-17	퇴비사	161	㎡	19,320,000		
37	거창읍	대동리	530-17	퇴비사	40	㎡	4,800,000		
38	거창읍	대동리	530-47	축사	144.4	㎡	38,988,000		
39	거창읍	대동리	530-47	축사	144.4	㎡	38,988,000		
40	거창읍	대동리	530-47	축사	140.6	㎡	37,962,000		
41	거창읍	대동리	530-47	창고	225.9	㎡	52,860,600		
42	거창읍	대동리	530-47	화장실	5	㎡	1,500,000		
43	거창읍	대동리	530-48	축사	33	㎡	7,425,000		
44	거창읍	대동리	530-48	창고	10	㎡	2,250,000		
45	거창읍	대동리	530-48	창고	72.3	㎡	16,267,500		
46	거창읍	대동리	530-48	창고	7.5	㎡	1,687,500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원) (가감정액)	취득 시기	비고
	소재지			종류	수량 및 면적	단위			
47	거창읍	대동리	530-48	축사	15	㎡	3,375,000		
48	거창읍	대동리	530-7 530-11	창고	84	㎡	18,144,000		
49	거창읍	대동리	530-7 530-11	가추	24	㎡	1,440,000		
50	거창읍	대동리	530-7 530-11	축사	110	㎡	29,700,000		
51	거창읍	대동리	530-7 530-11	축사	114	㎡	30,780,000		
52	거창읍	대동리	530-7 530-11	창고	7.5	㎡	1,350,000		
53	거창읍	대동리	530-24	축사	32	㎡	7,776,000		
54	거창읍	대동리	530-24	축사	72.6	㎡	17,641,800		
55	거창읍	대동리	530-24	축사	88	㎡	21,384,000		
56	거창읍	대동리	530-24	가추	24	㎡	1,920,000		
57	거창읍	대동리	530-24	창고	22	㎡	3,960,000		
58	거창읍	대동리	530-24	창고	17	㎡	3,060,000		
59	거창읍	대동리	523	축사	912	㎡	287,280,000		
60	거창읍	대동리	523	물 탱크실	4.5	㎡	598,500		
61	거창읍	대동리	523	축사	585.2	㎡	158,004,000		
62	거창읍	대동리	523	창고	40	㎡	7,200,000		
63	거창읍	대동리	523	축사	14	㎡	2,520,000		
64	거창읍	대동리	523	창고	10.5	㎡	1,890,000		
65	거창읍	대동리	523 산21-4	축사	260	㎡	63,180,000		
66	거창읍	대동리	523 산21-4	축사	320.5	㎡	77,881,500		
67	거창읍	대동리	523 산21-4	퇴비사	236.8	㎡	30,547,200		
68	거창읍	대동리	523 산21-4	축사	156	㎡	42,120,000		
69	거창읍	대동리	523 산21-4	축사	156	㎡	42,120,000		
70	거창읍	대동리	523 산21-4	축사	156	㎡	42,120,000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원) (가감정액)	취득 시기	비고
	소재지			종류	수량 및 면적			
71	거창읍	대동리	523 산21-4	창고	3.6	㎡	478,800	
72	거창읍	대동리	526	주택 등	49.4	㎡	20,007,000	
73	거창읍	대동리	526	보일러 실	2.5	㎡	285,000	
74	거창읍	대동리	526	축사	190	㎡	51,300,000	
75	거창읍	대동리	526	축사	243.2	㎡	65,664,000	
76	거창읍	대동리	526	축사	319.2	㎡	86,184,000	
77	거창읍	대동리	526	축사	349.6	㎡	94,392,000	
78	거창읍	대동리	526	축사	288.8	㎡	77,976,000	
79	거창읍	대동리	526	퇴비사	153	㎡	19,737,000	
80	거창읍	대동리	526	퇴비사	243.2	㎡	31,372,800	
81	거창읍	대동리	527	축사	304	㎡	82,080,000	
82	거창읍	대동리	527	가추 (창고)	156	㎡	14,820,000	
83	거창읍	대동리	527	축사	273.6	㎡	73,872,000	
84	거창읍	대동리	527	축사	281.2	㎡	75,924,000	
85	거창읍	대동리	527	축사	286	㎡	77,220,000	
86	거창읍	대동리	527	축사	190	㎡	51,300,000	
87	거창읍	대동리	527	가추	3.6	㎡	288,000	
88	거창읍	대동리	527	축사	197.6	㎡	53,352,000	
89	거창읍	대동리	528-1	축사	57.2	㎡	13,899,600	
90	거창읍	대동리	528-1	축사	144	㎡	34,992,000	
91	거창읍	대동리	528-2 528-3	축사 (반파)	248.4	㎡	23,598,000	
92	거창읍	대동리	528-2 528-3	축사 (반파)	96	㎡	9,120,000	
93	거창읍	대동리	528-2 528-3	축사	72	㎡	17,496,000	
94	거창읍	대동리	528-2 528-3	퇴비사	120	㎡	14,400,000	
95	거창읍	대동리	528-4	축사	190	㎡	51,300,000	
96	거창읍	대동리	528-5	창고	16	㎡	3,600,000	
97	거창읍	대동리	528-5	축사	190	㎡	46,170,000	
98	거창읍	대동리	528-5	창고	1.5	㎡	186,000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원) (가감정액)	취득 시기	비고
	소재지			종류	수량 및 면적			
99	거창읍	대동리	528-5	퇴비사	184	㎡	22,080,000	
100	거창읍	대동리	528-5	축사	167.2	㎡	40,629,600	
101	거창읍	대동리	528-5	계근대 및 창고	45.6	㎡	6,064,800	
102	거창읍	대동리	528-5	창고	6.5	㎡	806,000	
103	거창읍	대동리	528-5	축사	197.6	㎡	48,016,800	
104	거창읍	대동리	528-7	퇴비사	92.4	㎡	11,088,000	
105	거창읍	대동리	528-7	축사 (반파)	124.8	㎡	11,856,000	
106	거창읍	대동리	528-7	퇴비사	83.6	㎡	10,032,000	
107	거창읍	대동리	528-9	축사	66	㎡	16,038,000	
108	거창읍	대동리	528-6 528-11 529-3	퇴비사	74.4	㎡	8,928,000	
109	거창읍	대동리	528-6 528-11 529-3	축사	111.7	㎡	27,147,960	
110	거창읍	대동리	528-6 528-11 529-3	축사	182.2	㎡	44,284,320	
111	거창읍	대동리	528-6 528-11 529-3	축사	141.3	㎡	34,350,480	
112	거창읍	대동리	528-6 528-11 529-3	축사 (반파)	125.4	㎡	11,913,000	
113	거창읍	대동리	971외	축사	147	㎡	31,752,000	
114	거창읍	대동리	529-5	축사	129.5	㎡	34,965,000	
115	거창읍	대동리	529-6	축사	133	㎡	35,910,000	
116	거창읍	대동리	528-10 529-4 530-57	퇴비사	78.3	㎡	9,396,000	
117	거창읍	대동리	528-10 529-4 530-57	축사	112.2	㎡	27,264,600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원) (가감정액)	취득 시기	비고
	소재지			종류	수량 및 면적			
118	거창읍	대동리	528-10 529-4 530-57	축사 (반파)	180	㎡	17,100,000	
119	거창읍	대동리	528-10 529-4 530-57	창고	7.2	㎡	1,296,000	
120	거창읍	대동리	528-10 529-4 530-57	축사 (반파)	96	㎡	9,120,000	
121	거창읍	대동리	528-10 529-4 530-57	퇴비사	72	㎡	8,640,000	
122	거창읍	대동리	528-10 529-4 530-57	축사	45	㎡	10,935,000	
123	거창읍	대동리	528-10 529-4 530-57	축사 (반파)	45	㎡	4,275,000	
124	거창읍	대동리	528-10 529-4 530-57	축사	90	㎡	21,870,000	
125	거창읍	대동리	528-10 529-4 530-57	축사	140	㎡	34,020,000	
126	거창읍	대동리	528-8 530-53 530-56	축사	221	㎡	53,703,000	
127	거창읍	대동리	528-8 530-53 530-56	축사	197.1	㎡	47,895,300	
128	거창읍	대동리	528-8 530-53 530-56	창고	158.4	㎡	20,433,600	
129	거창읍	대동리	528-8 530-53 530-56	창고	72.8	㎡	9,391,200	
130	거창읍	대동리	528-8 530-53 530-56	축사 (반파)	51.84	㎡	4,924,800	
131	거창읍	대동리	530-52	창고 (반파)	60	㎡	6,840,000	
132	거창읍	대동리	530-54	창고	104.2 8	㎡	22,524,480	
133	거창읍	대동리	530-33	축사	77	㎡	17,325,000	
134	거창읍	대동리	324-1 324-2	축사	347.8	㎡	93,906,000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원) (가감정액)	취득 시기	비고
	소재지			종류	수량 및 면적			
135	거창읍	대동리	324-1 324-2	가추 (창고)	18	㎡	1,440,000	
136	거창읍	대동리	324-1 324-2	축사	69.3	㎡	16,839,900	
137	거창읍	대동리	324-1 324-2	퇴비사	111	㎡	14,319,000	
138	거창읍	대동리	532-1	창고	187	㎡	52,173,000	
139	거창읍	대동리	532-1	가추	65	㎡	4,550,000	
140	거창읍	대동리	532-1 532-3	축사	124.8	㎡	30,326,400	
141	거창읍	대동리	532-1 532-3	방 및 창고	82.8	㎡	26,082,000	
142	거창읍	대동리	532-1 532-3	가추	17.5	㎡	1,400,000	
143	거창읍	대동리	532-1 532-3	축사	64	㎡	15,552,000	
144	거창읍	대동리	532-1 532-3	축사	155.4	㎡	41,958,000	
145	거창읍	대동리	532-1 532-3	축사	185	㎡	49,950,000	
146	거창읍	대동리	532-1 532-3	축사	185	㎡	49,950,000	
147	거창읍	대동리	532-1 532-3	퇴비사	115.2	㎡	14,860,800	
148	거창읍	대동리	532-1 532-3	가추 (창고)	36	㎡	3,420,000	
149	거창읍	대동리	530-23	축사	175.5	㎡	42,646,500	
150	거창읍	대동리	530-23	축사	97	㎡	23,571,000	
151	거창읍	대동리	530-23	화장실	2.24	㎡	1,400,000	
152	거창읍	대동리	530-23	축사	108	㎡	26,244,000	
153	거창읍	대동리	530-23	창고 (반파)	4	㎡	380,000	

[붙임3] 위도 및 지적현황, 현장전경





④ 신원면 신바람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1. 제안이유

- 국토교통부 소관 「1)주거플랫폼 구축사업」 공모 선정
 - 구.거창중학교 1)신원분교(폐교) 부지 일부를 활용,
 - ① 어울림센터·숲 도서관 신축 : 주민 소통 및 문화공간 조성
 - ② 체육관 리모델링 : 지역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간 제공

※ 1)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 추진방향 : 농촌지역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생활SOC+일자리'를 연계하여 공급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사업명 : 신원면 신바람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 위치 :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253-5번지 (구.신원분교)
- 사업기간 : 2022. ~ 2024.
- 사업내용 : 어울림센터·숲 도서관 신축(1층, A=469㎡),
기존 체육관 리모델링(1층, A=295㎡)
- 총사업비 : 2,800백만원(균특 100%)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센터 신축	2,800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200	시행계획 수립·고시	2,040	공사 준공	560		
균특	-	2,800		200		2,040		560		
도비	체육관 리모델링	-		-	공사 착공	-		-	-	
군비		-		-		-		-	-	

나. 취득(또는 처분)재산 세부내역

○ 취득내용

- 어울림센터·숲 도서관 신축 1동 (1층, 건축면적 469㎡)
- 기존 체육관 리모델링 1동 (1층, 건축면적 295㎡)

○ 세부 시설내역 및 소요예산

- 어울림센터·숲 도서관(신축) : 1,725백만원(3.7백만원/㎡ 적용)

층별	세부시설	건축면적(㎡)	용도
계		469.0	주민 소통 및 문화공간 조성
1층	다목적홀	144.0	동아리 활동 및 영화관, 행사공간
	숲속 도서관	40.3	도서관
	카페/휴게실	64.0	휴게공간
	화장실, 샤워실	74.9	이용편의시설
	복도 등 기타	145.8	부대시설

- 체육관(리모델링) : 810백만원(2.7백만원/㎡ 적용)

층별	세부시설	건축면적(㎡)	용도
1층	체 육 관	295	체육 및 동아리 활동, 행사공간

다. 추진경과

- 2021. 8. : 2021년 국토교통부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공모선정
- 2022. 2.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사업부지 용도변경)

< 당 초 >

연번	소재지	면적(㎡)	용도	비고
1	과정리 253 구.신원중	12,756	노인 요양 시설 신축	행복 나눔과

분할
→

< 변 경 >

연번	소재지	면적(㎡)	용도	비고
1	과정리 253	10,627	노인 요양시설 신축	행복 나눔과
2	과정리 253-5	2,129	주거 플랫폼 구축	미래 전략과

- 2022. 6. : 주민설명회 개최 - 사업계획(안) 주민의견 수렴
- 2022. 8. :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3. 2. : 주민설명회 개최 - 실시설계용역 중간 보고

라. 향후계획

- 2023. 4. :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실시설계 완료
- 2023. 4. ~ 5. : 관련 인.허가 협의 및 사업 승인·고시
- 2022. 6. ~ 2024. 10. : 공사 착공 및 준공

마. 기대효과

- 지역소멸 위기의 면지역 정주여건과 삶의 질 개선
- 지역민 문화·체육 복지에 대한 수요 충족 및 지역민 간 화합의 공간 제공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건축계획도 : 붙임 참조

[붙임1] 위치도 및 건축계획도

□ 위치도 (사업계획도)



□ 건축계획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① 제2창포원 생활체육시설 부대시설 확충 사업 건은

- 남하면 무릉리 일원 하천환경정비사업 부지 내에 파크골프장, 축구장, 풋살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 사업 완공 후 사무실, 화장실,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지만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하여 하천구역 내 이동 또는 고정 건축물 입지가 불가하므로
- 하천구역이 아닌 인근 남하면 무릉리 505번지 등 7필지 6,103㎡를 매입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향후 제2창포원 생활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② 감악산 별바람 언덕 조성 사업 변경 건은

- 2022년 11월 수립한 감악산 및 주요 명산 마스터플랜에 따라 산림관광객 100만 시대를 목표로 감악산 산림관광 지구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해서 당초 184ha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필수사업 부지 74ha를 우선 매입하고자 함.

- 코로나 이후 넓고 탁 트인 공간을 선호하는 관광객의 수요에 맞춰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산림휴양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③ 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편입부지 및 지장물건 매입)건은

- 동산마을 주민들은 마을 내 폐축사의 악취와 유해물질로 오랜 세월 주거 환경의 위협을 받아왔고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 공간정비사업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250억원을 확보하여 폐축사 단지 120동을 철거하고, 친환경 경관단지와 교육농장, 생태습지를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에게 휴식과 학습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④ 신원면 신바람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건은

- 신원면 신바람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은 2021년 국토교통부 소관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28억원을 확보하여
- 구. 거창중학교 신원분교 폐교 부지에 주민 소통 문화공간과 지역민 생활체육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 이번에 취득하는 재산은 어울림센터 숲 도서관 신축 1동 (469m²)과 기존 체육관 리모델링 1동(295m²)임.
- 신원면 신바람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은 신원초등학교 폐교위기 탈출을 위한 LH공공임대주택 신축사업과 연계해 생활SOC를 확충하고 지역주민과 이주민이 교류·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필요성이 상당하며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